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103
----------	------

제 안 년 월 일 : 2022년 2월 11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노승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7번)과 오한아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1번)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2월 1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프로스포츠단의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제1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8의2. <u>“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u></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7. (생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제18조(지원)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8조(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